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의 판단

-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 -

Study on Judging Occupational Disease by Psychological Autopsy

황태윤* · 류문호** · 안성호***

Hwang, Tae-Yoon · Ryu, Mun-Ho · Ahn, Seong-Ho

목 차

- | |
|---------|
| I. 대상판결 |
| II. 연구 |

국문초록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재판상 감정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에 따라 대상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심리적 부검’은 신체적 사상(死傷)이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종래 재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방법이라는 의의가 있다. ‘심리적 부검’을 재판상 관행으로 정착시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

논문접수일 : 2014.02.07

심사완료일 : 2014.03.03

게재확정일 : 2014.03.05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연구책임자)

** 법학박사과정 수료, 인사실무연구소 공감(共感) 연구위원(공동연구자)

*** 법학박사과정 수료, AK Labor Consulting 대표 공인노무사(공동연구자)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부검에 의한 감정의 결과가 법관에게 풍부하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연구되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면담 및 진술이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심리적 부검'의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의 결과가 의학 분야 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더라도 법관이 그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은 감정인과는 독립된 입장에서 '심리적 부검'의 결과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건강한 사회적 관계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회사(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법 제43조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시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심리적 부검, 공무상 질병, 직장 내 스트레스, 자살사망자, 우울증

1. 대상판결

1. 사건의 경위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세무공무원인 김모(당시 44세)씨는 2009년 어느 날 새벽,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김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오! 일은 계속 떨어지는데 직원은 보내주지 않고, 팀장은 욕만 먹고, 한직에서 고생하는 직원을

우대해줘야 합니다. 내가 죽는 이유는 사무실의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란 것을 확실히 밝혀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김씨의 부인)는 피고(공무원연금공단)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김씨의 유서와 우울증 감정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제1심)¹⁾은 “업무과다가 우울증의 발병 계기는 될 수 있어도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씨의 유서내용은 김씨 스스로 생각하는 자살의 원인일 뿐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판결(제2심)은 원심의 결과를 뒤집고, “망인의 사망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망인의 사망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제2심에서는 자살과 우울증 전문가인 민성호 교수(연세대 원주의대)가 법원 행정처에 의해 감정인으로 추천되었고, 同 교수는 김씨의 유족 4명과 직장 동료 3명 등 7명을 10시간 동안 면담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다. '심리적 부검' 결과 ① 김씨가 직장에서 “일은 많은데 직원이 없어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수시로 했던 점, ② 자살 직전 부하 직원에게 “몸이 힘들어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화했다가 결국 부인에게 “일이 많아 출근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던 점, ③ 자살 직전 34인치였던 허리둘레가 31인치로 줄었을 정도로 식욕을 잃었다는 점 등의 사실이 밝혀졌다. 同 교수는 “김씨가 개인적·경제적 이유 없이 순수하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진술하였고,²⁾ 이러한 '심리적 부검' 결과가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 서울행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1구합3272 판결.

2) 중앙일보, “자살자 감정 상태 분석 ... '심리 부검' 첫 인정받았다”, 2013. 12. 23.자 기사.

2. 대상판결(서울고법 2013. 12. 19. 2012누27505)의 주요내용

가. 주요증거

1심 서울행정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서 정신과 전문의 한○○은 망인의 자살 원인에 대하여 아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9가지 중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망인은 ②, ③, ④, ⑥, ⑧에 해당하므로 우울병 또는 주요우울장애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① 하루 대부분 동안 우울한 기분, ②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의 저하, ③ 현저한 체중감소 또는 식욕의 감소, ④ 불면, ⑤ 정신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 ⑥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⑦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⑧ 사고능력·집중력 저하 또는 우유부단, ⑨ 반복적인 죽음의 관념, 자살기도 또는 자살기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기질적 취약성이 우울병의 근본적인 발병 원인이고 또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은 발병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망인이 기질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자료가 부족하여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의 업무량은 망인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의 이유를 밝힌 경우 그것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살과의 관련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망인의 경우 우울병이 진행되면서 자살사고(思考), 좌절감, 충동성 등이 겹쳐 자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2심 서울고등법원이 감정축탁한 정신과 전문의 민○○은 망인의 자살 원인에 대하여 아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매우 심한 우울장애 상태에 있었다. 주요우울장애의 발병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 신경생물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직계가족 중에 정신병증상·공황장애·불안장애·알코올의존성장애 등을 겪은 사람이 있을 경우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신경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등의 신경전달물질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축의 활성화 등이 주요우울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 신경생물학적 요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망인의 경우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주요우울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힘든 일을 도맡아하면서 업무에 있어 완벽을 추구하여 상사를 포함한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왔는데, 자신이 처하게 된 불합리한 조직개편·업무의 과중·승진의 좌절 등을 자기애의 대상이었던 직장과 조직으로부터의 거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는 망인의 자기애에 대한 손상을 가져와 우울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 신경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전적 요인과 신경생물학적 요인은 위 내용과 비슷한데 망인의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경생물학적 요인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망인은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자살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망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과 우울장애의 발현으로 야기된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자살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망인이 과다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위해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을 업무에 투자하였는데 승진이 좌절됨으로 인하여 느끼게 된 상실감, 불합리한 조직 개편·업무의 과중·승진의 좌절에 대한 불만의 수동-공격적(passive-aggressive) 방법을 통한 표출,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증가에 따른 망인의 혼란 상태, 그 과정에서 망인이 가지게 된 자신의 삶이 가치가 없고 이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남자, 이혼, 우울장애, 알코올중독, 최근의 외상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망인이 남자라는 점과 우울장애에 있었다는 점이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우울장애는 자살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우리나라 자살기도자의 50.9%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우울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을 할 확률이 20.4배 높다.

나. 판단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무원이 종사한 업무의 내용과 성질, 근무환경, 당해 공무원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두225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도 공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우울장애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정신적 역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공무상 스트레스 외에는 망인이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책임감이 강한 망인이 2008. 10. 27.부터 ○○지방 국세청 본청에서 조사2국 조사1과 3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근무시간보다 40% 가량 초과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무량을 성실하게 처리해왔는데 2009. 9. 1.부터는 조사1국 조사1과 심리분석전담반장까지 겸하여 업무량이 더욱 많아졌음에도 충원되어야 할 조사1국 직원 3명이 충원되지 아니하여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와중에 2009. 11. 5.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심한 절망감과 함께 자신을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부당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다는 배신감까지 느껴 중증의 우울장애가 발병하였으며, 그 후에도 업무량은 줄지 않고 부하 직원의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공무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2010. 2. 정기인사 때 관내 세무서로의 전근을 신청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본청 근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관내 세무서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승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9. 11. 30.(월요일) 심리분석전담반의 중간업무보고를 앞두고 되자, 중증의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공무원상의 스트레스와 절망감 등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2009. 11. 29.(일요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우울장애 발병 및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공무원이 공무원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망인의 사망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II. 연구

1. 序

우리나라의 2012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8.1명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가장 높다.³⁾ 이는 자살률이 가장 낮은 그리스(10만 명당 3.3명)는 물론 2위인 일본(10만 명당 20.9명)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⁴⁾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10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정부는 2011. 3. 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2012. 3. 31. 시행)하여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여 자살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높은 자살률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자신이 근로를 제

3) 통계청, 「2012년 사망원인통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3.

4) 이투데이, "한국 자살률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2013. 9. 25.자 기사.

공하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2012년 자살률은 2011년보다는 감소했지만 10년 전인 2002년 8,612명이었던 자살사망자수는 2012년 14,61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연령별 사망원인도 10대, 20대, 30대 모두 자살이 1위였고, 40~50대에서도 2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0~9세를 제외한 전체 인구에서도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원인은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등 다른 사고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 자살이 2배 가까이 많을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만, 근로자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에 의한 노동의 통제가 심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신(新)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⁶⁾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 12. 19. 국내 최초로 '심리적 부검'에 의한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다. 법원은 "근로자가 중증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공무)와 망인의 우울장애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상판결은 비록 고등법원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심리적 부검'이라는 새로운 감정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자살 문제에 접근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우울증 등 소위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법의 판단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본고는 대상판결의 사안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된 '심리적 부검'이 무엇인지 살펴본 뒤, 대상판결의 의의와 그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5) 2010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전체 인구 4,858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 현재 임금근로자는 1,814만 명으로 전 국민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근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통계청, "국내인구통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6) 경향신문, "한국만 늘어나는 '사회적 타살'", 2014. 1. 5.자 기사.

2. '심리적 부검'의 개념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란 자살사망자에 대해 수집된 포괄적인 후향적⁷⁾ 정보를 가지고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다. '심리적 부검'은 죽음의 형태는 너무 명확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⁸⁾ '심리적 부검'의 목표는 자살사망자의 의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실제로 죽음을 원했던 것이었다면 자살, 죽음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인 것이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 피해 유가족이나 생존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경감시켜 주어서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⁹⁾

우리나라에서 '부검'은 병사(病死)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검시(檢視)를 받게 되어 있으며 검시의 책임자는 검사로 되어 있다.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변사체에 대해서만 의학적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추락사의 경우와 같이 자·타살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죽음이 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자살한 것인지, 본인의 발을 헛디디 실족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밀어서 떨어진 타살인 것인지를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타살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체부검상의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검'을 함께 활용하여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¹⁰⁾

7) '후향적 연구(Retrospective Study)'란 현 시점에서 과거의 기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며, 반대로 현 시점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는 방법을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라고 한다.

8) Edwin S. Shneidman, 조용범 역, 「에드윈 슈나이드먼 박사의 심리부검 인터뷰」, 학지사, 2014, 60면. 이 책은 어느 날 저자가 자살예방에 관한 강의를 끝냈는데 한 여성이 저자에게 다가가 의사이자 변호사였던 30대 아들의 자살유서 사본(11쪽)을 건네주면서 저자의 생각을 듣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저자는 그 당시 80대 중반이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살사망자의 어머니, 아버지, 형, 여동생, 친구, 전 부인, 여자 친구, 심리치료사,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등 9명을 몇 개월에 걸쳐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9) Edwin S. Shneidman, 전계서, 같은 면.

10) 신성원, "심리부검 연구의 실무적 활용 및 윤리적 고려사항",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2005, 232-237면.

3. '심리적 부검'의 연혁과 우리나라 현황

'심리적 부검'에 대한 첫 연구는 1956~1957년 사이에 미국의 Washington대학 의과대학에서 Eli Robin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심리적 부검'이라는 용어는 1958년 LASPC(Los Angeles Suicide Prevention Center)의 책임자인 Edwin S. Shneidman, Norman Farberow, Robert Litman에 의해 사용되었다. 최초의 '심리적 부검' 기록은 LA 카운티의 검시의인 T. J. Curphey의 요구에 따라 Robert Litman에 의해 수행되었다.¹¹⁾ 이후 많은 나라에서 '심리적 부검'이 실시되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가 1987년 4월부터 1988년 3월까지 발생한 자살 사례 1,397건 전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여 자살사망자 예방관리에 큰 효과를 보았다. 일본도 꾸준히 자살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부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7년까지 총 50건의 '심리적 부검' 조사를 완료하였다.¹²⁾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한국형 심리적 부검 조사체계 및 도구'를 개발하고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있지만,¹³⁾ 아직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부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자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인이나 가족의 자살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유족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정보 획득은 감정적으로 치우쳐 정보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¹⁴⁾

11) 신성원, 전제논문, 같은 면.

12) 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구축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009, 15-16면.

13) 참고로 2014. 1.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심리적 부검 및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예산'으로 9억6,000만원이 배정되었다(아시아투데이, "늘어나는 우울증 자살에 주목받는 '심리적 부검'", 2014. 1. 11.자 기사).

14) 이구상 외 6인, "자살사망자의 취약 심리적 부검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신보건센터, 2012, 19면.

4. '심리적 부검'의 방법과 내용

'심리적 부검'은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들이 자살사망자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주요 인물들, 즉 부모, 배우자, 자녀, 연인, 직장 동료,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체계적인 면담과 질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자살사망자가 남긴 각종 기록들, 경찰의 사건수사기록,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검시관의 진술 등을 함께 수집하여 자살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을 거친다.¹⁵⁾ 자살사망자가 남겨 놓은 자료나 흔적(일기장, 유서, 사진,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이력,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 이력,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토리·블로그 등 SNS 관련사항) 및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등 모든 활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여 "왜 그 사람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게 된다. '심리적 부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 사망자가 자살을 했는가를 알게 된다. 사망의 종류가 각종 증거물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 '심리적 부검'으로 그 행위의 이유를 설명하고 무엇이 그 행위의 원인이 되었는가를 밝히는데 유효하다. '심리적 부검'을 함으로써 사망자의 생존 시의 인생관, 심리적 변화, 동기, 실존적 위협의 유무 등을 밝힐 수 있다. 둘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망하였는가, 또 그때 사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사회·심리적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사망원인은 확실하나 사망의 종류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심리적 부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¹⁶⁾

5.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사업주의 의무'와 제43조 '건강진단'

2013. 6. 12. 개정(시행일 : 2014. 3. 13.)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15) 이구상 외 6, 전계논문, 18면.

16) 문국진, 「강시·강시(Misfitted deaths·Mistakable deaths)», 청림출판, 1991, 275면.

시책에 따라야 한다.”, 동조 동항 제2호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3조는 [건강진단]이란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건강한 사회적 관계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회사(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동법 제43조의 건강진단에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을 측면도 있다. 따라서 동법 제43조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 시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¹⁷⁾ 근로자의 인권과 정신건강, 그에 따른 자살 등의 문제는 일단 침해가 발생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사전 예방(구제)’의 관점에서 사회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면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책임을 사회에 묻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재연되기 마련이다. 최근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회적 분

17)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신체적 건강에 대한 진단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 콜레스테롤

노나 대인관계의 갈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¹⁸⁾ ‘심리적 부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대상판결을 통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회사(사업주)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업무와 조직문화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사업주)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에도 일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6. ‘심리적 부검’에 의한 공무상 질병 인정의 중요성

대상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은 공무원이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역시 “담당 공무원 3명만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급격한 체중 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또한 망인이 정신과 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망인은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망인의 이러한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망인 및 그 가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고, 망인의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위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위 2010두8553 판결과 같은 법리로 원심 파기

18) 중앙일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 2013. 9. 28.자 기사.

환송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8994 판결은 2000. 11. 15. 대구보건대 1년 재학 중 해병대하사관 입대, 2002년경 우울증 진료, 2003. 4. 3. 총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 상급자의 거듭된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망인의 나약한 성격 등으로 군부대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엄격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위 각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겠지만, 스트레스 외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는 사실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위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당사자의 노력이나 지식, 사실심 법관의 열의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⁹⁾ 우울증, 과로사, 자살과 같은 경우 무엇보다 감정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 감정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감정결과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감정인이 재판의 쟁점과 관련한 적절한 감정사항을 의뢰받고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²⁰⁾ 감정과정에서는 증언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문맥이 애매한 경우,

19) 감정은 인증(人證)의 일종이다.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직접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사감정(私鑑定)과 달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서증(書證)으로 취급할 수 없다.

20) 사법연수원, 「재판이론과 실무 법적판단」, 2001, 102면.

문서와 다른 어떤 약정이 있는 경우, 명백한 간접사실이 있으나 주요사실과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증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²¹⁾ 사건을 재현하는 정도에서 서증은 주로 '점'으로서의 기능에 그치는 반면 증언은 '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²²⁾

대상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이라는 감정방법을 활용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체적 사상(死傷)이 아닌 우울증, 과로사, 자살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적 판단도구로 '심리적 부검'이 채택되었다는 의미로도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경우,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²³⁾ 그러나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으며, 감정인에 대한 법정에서의 심문을 충분히 활용하여 감정인이 내리게 된 결론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법원이 규범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²⁴⁾ 법원은 감정인이 내린 결론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리적 부검'에 의하여 드러난 제반 사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감정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조사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²⁵⁾ 따라서 '감정인이 판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인공으로서의 법원과 조력자로서의 감정인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²⁶⁾ 이러한 지적은 '심리적 부검'의 경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심리적 부검'의 중요성은 입증책임과도 연관이 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

21) 이견웅, 「민사재판과 사실인정」, 「재판자료집(제25집)」, 법원도서관, 1985, 16면.

22) 이순동, 「민사소송의 사실인정과 증인신문기법」, 진원사, 2009, 119-121면.

23) 감정절차는 증인신문에 준한다(민사소송법 제333조, 민사소송규칙 제104조).

24) 이와 관련하여 사법연수원, "전문가 증언의 실제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재판이론과 실무 세미나 - 증거조사론 자료집」, 2010, 96-98면은 "감정결과가 다소 불명확할 경우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를 보내어 보다 구체적인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감정인이 법정에서 나와 감정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25) 강현중, 「민사소송법(제3전정판)」, 박영사, 1999, 562면.

2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7, 448-449면.

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코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그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더 나아가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하직원 등 회사동료나 상급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도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남서울전력관리처장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다가 자리를 비워 버리는 바람에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직장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

기는 부적합하다고 하겠다."라고 판시하였다.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 위 판례의 태도이다. 해당 근로자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업무의 강도를 자신과 비교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그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워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²⁷⁾ 개별적 사안마다 입증책임의 원칙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송 실무상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에 따라 판결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관점보다는 법관에게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얼마나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심리적 부검'은 해당 전문가를 통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의 법정증언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왜곡이 적고 풍부한 자료를 법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인의 최종 의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부검'의 중요성은 사실상 감정인이 법관을 대신하여 자살자가 남긴 생전의 기록(사실) 확인과 주위 사람의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피상적 논쟁보다는 소송과정에서 보다 많은 판단자료를 법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심리적 부검'은 재판에서의 관행으로 정착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7. 結

대상판결이 원용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은 망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고, 망인의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하였다. 대

27) 김형배,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7, 442면.

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8994 판결은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 상급자의 거듭된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지만,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스트레스 외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는 사실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당사자의 노력이나 지식, 사실심 법관의 열의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대상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활용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공무상 질병(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신체적 사상(死傷)이 아닌 우울증, 과로사, 자살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적 판단도구로 '심리적 부검'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을 갖는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사망자 주변 주요 인물들 상대로 체계적인 면담과 질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자살사망자가 남겨 놓은 일기장, 유서, 사진,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이력,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 이력,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토티·블로그 등과 주변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료감정과 다른 차원의 감정입을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이고, '심리적 부검'이 근로자가 자살한 사안에 적용되는 개념과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평가와 후속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감정에서 증인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한 다음 그대로 기억에서 인출하여 표현할 수 있다면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증언이란 사람의 '불확실한 관찰과 인식' 및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고, 다시 그 기억이 '불확실한 언어'를 통하여 나타나며,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가 많아서 더욱 불확실할 수 있다.²⁸⁾ 증인은 기억에 의존해 과거의 특정 시점을 진술해야 하는 점에서 내용이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왜곡의 여지가 남아 있다. 증언은 신문의 방법이나 기술 등에

28) 이재홍, "서증의 종류, 증거력 및 조사방식", 「월간고시(제223호)」, 법지사, 2011, 85면.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²⁹⁾ 따라서 자살사망자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면담 및 진술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심리적 부검'의 결과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그러한 증거에 따라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소송법상 검토가 필요하다.³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피상적 논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최종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법관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적 부검'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사실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감정인의 결론이 비록 전문가의 고유한 영역에 대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법관이 그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감정인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면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감정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입장에서 법관 스스로 충분히 탐구하여,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급박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압박은 근로자의 노동과 삶의 질 모두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노동강도의 강화·구조조정³¹⁾ 등에 따른 고용불안의 요소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³²⁾ 등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협

29) 사법연수원, 「재판이론과 실무 법적판단」, 2001, 98면.

30) 증인의 신빙성은 주관적 측면(진술자의 성실성)과 객관적 측면(진술자의 인식-기억-표현과정의 정확) 양면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먼저 증인이 의식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인의 사회적 지위, 당사자 또는 사건과의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해유도 등 작용의 유무, 진술태도 등에 유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칙이 작용한다(이건웅, 전계논문, 18-19면).

31)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아 15명이 넘는 영업사원에게 강제이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협박을 당해 공황장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한 공황장애는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머니투데이, “법원 동료 해고 통보로 생긴 공황장애도 업무상 재해”, 2014. 1. 22.자 기사).

32)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는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의 문제, 위장장애와 두통 등 정신신체질환, 대인관계의 장애 및 그로 인한 정신질환을 재발시키며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증상의 빈도를 4배 정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조정진,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5-6면).

하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신 그 자체가 아닌 육체적 부담이나 손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질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현대 산업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³³⁾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가 건강한 사회적 관계 및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회사(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원은 판결이유에 이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43조의 건강진단에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동법 제43조에 의한 정기적 '건강진단' 시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입법정책적인 개선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상판결 전반에 걸쳐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소위 '하라면 하라'는 직장업무와 조직문화 속에서 혼자 괴로움을 감당하다가 우울증을 얻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대상판결에서 '심리적 부검'을 담당했던 감정인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조직문화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³⁴⁾ 우리나라에서의 자살은 사회 구성원이 감싸 안고 보듬지 못해 극단적인 길을 택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회적 타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업무명령 혹은 사실상의 조치라는 사용자의 재량적 행위를 통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자신의 통제와 노력으로 이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³⁵⁾ 근로자가 회사에서 느끼는 업무상 스트레스, 괴로움 등을 단지 근로자 개인의 성향과 책임의 몫으로만 돌리던 과거의 태도는 대상판결을 기점으로 지양되어야 한다.³⁶⁾ 직장(조직)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3) 김가람,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서강법학」,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98면.

34) 한겨레신문, "개인희생 당연시하는 조직문화 바뀌어야", 2013. 12. 23.자 기사.

35) 島田 陽一, "企業における労働者の人格權", 「労働者の人格と平等」(講座 21世紀の労働法 第6卷), 日本労働法學會, 2000, 7面.

36) 특히 자살을 포함한 자상(自傷)행위는 자기의 의사가 개재(介在)하는 것, 즉 고의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중단시키는 것이 되며, 그것은 근로자의 자기책임 영역에 속하고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 이는 자살행위를 노동관계상 위험의 발현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良永弥太郎, "ストレスによる精神神経疾患と自殺

협력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근로자 개인들은 그 체계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개인의 심리가 단지 개인의 몫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회조직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떠한 메커니즘이 근로자 개인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지, 정말 자살이 그 사회조직적인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사회철학적인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중, 「민사소송법(제3전정판)」, 박영사, 1999.
김형배,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7.
사법연수원, 「재판이론과 실무 법적판단」, 2001.
이순동, 「민사소송의 사실인정과 증인신문기법」, 진원사, 200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7.
조정진,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통계청, 「2012년 사망원인통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3.
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구축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009.
Edwin S. Shneidman, 조용범 역, 「에드윈 슈나이드먼 박사의 심리부검 인터뷰」, 학지사, 2014.
문국진, 「강시·강시(Misfitted deaths·Mistakable deaths)」, 청림출판, 1991.
김가람,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서강법학」,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はどのような場合に業務上と認められるか”, 保原喜志夫・山口浩一郎・西村健一郎 編, 「労災保険・安全衛生のすべて」, 有斐閣, 1998, 206面).

- 김명중, “일본의 직장 내 스트레스 관련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사법연수원, “전문가 증언의 실제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재판이론과 실무 세미나 - 증거조사론 자료집」, 2010.
- 서종한 외 4인, “한국 자살사망자 특징: 사례-대조 심리적 부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2012.
- 신성원, “심리부검 연구의 실무적 활용 및 윤리적 고려사항”,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2005.
- 이건웅, “민사재판과 사실인정”, 「재판자료집(제25집)」, 법원도서관, 1985.
- 이구상 외 6인, “자살사망자의 축약 심리적 부검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신보건센터, 2012.
- 이재홍, “서증의 종류, 증거력 및 조사방식”, 「월간고시(제223호)」, 법지사, 2011.
- 이희자, “과로성 정신질환·자살과 업무상 재해”, 「산업관계연구」, 한국고용노동관계학회, 2011.
-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2.
- 전충현 외 2인, “군자살자의 자살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부검 적용 방안”, 「과학수사학」, 한국과학수사학회, 2012.
- 최병률,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판례해설(제91호)」, 법원도서관, 2012.
- 島田陽一, “企業における労働者の人格權”, 「労働者の人格と平等」(講座 21世紀の労働法 第6卷), 日本労働法學會, 2000.
- 長永弥太郎, “ストレスによる精神神経疾患と自殺はどのような場合に業務上と認められるか”, 保原喜志夫・山口浩一郎・西村健一郎 編, 「労災保険・安全衛生のすべて」, 有斐閣, 1998.

[Abstract]

Study on Judging Occupational Disease by Psychological Autopsy

Hwang, Tae-Yoon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Ryu, Mun-Ho

Research Fellow, HR Business Institute Gong-Gam

Ahn, Seong-Ho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AK Labor Consulting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Seoul High Court on December 19 for case number 2012 Nu 27505(hereinafter the 'Decision') was the first Korean court decision to utilize 'psychological autopsy' as a method of evaluation in court and adopting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s evidence. As a result, the Decision recognized the worker's death to suicide caused by workplace stress and depressive disorder as an occupational disease. 'Psychological autopsy' offers particular significance as a new method of evaluation that helps overcome existing limitations in court where only bodily injuries or deaths we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diseases. A way for the court to conduct 'psychological autopsy' through petition or its own authority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by establishing 'psychological autopsy' as a common practice in court hearings. There is also a need for research on the methodology so that the results obtained from psychological autopsy may provide objective and plentiful data assist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judges. 'Psychological autopsy' mainly focuses on the contents from interviews and statements of the suicide victim's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Therefore, further careful review and analysis will be necessary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legally valid to recogni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suicide by adopting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utopsy' as evidence. Even if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utopsy constitute evaluations of an expert in the medical field, it is not advisable for the judges to unconditionally rely on such evaluations. Judges should render an objective and normative decision based on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utopsy from a perspective that is independent and separate from the expert's views.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labor intensity as a result of rapid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is seriously damaging the mental health of workers. The mental health of workers must be recognized as a serious issue in today's modern industrial societ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rticle 5(1)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provides for the company's (employer's) obligation to create a work environment that is suitable for workers to maintain a healthy social relationship and mental heal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meaningful policy review on measures requiring the implementation of diagnoses conducted by relevant specialists such as psychiatry specialists and clinical counselors during the regular health check-up of workers as required by Article 43 of the same Act.

Key words : Psychological Autopsy, Occupational Disease, Workplace Stress, Suicide Victim, Depression